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89
----------	------

발의연월일 : 2025년 11월

발의자 : 박선미 의원

1. 제안이유

- 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하남시 학교급식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 판로처를 확보하고 학교급식 수요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 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재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다. 법령 정비기준 및 맞춤법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안 제1조~안 제2조)
- 학교급식에 우수 지역농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 나. 지역농산물의 정의 신설(안 제3조제2호의2)
- 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재정비(안 제7조제4항)
- 기존의 위원 추천 인원 제한을 삭제해 자율성 확대
 -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을 위원에 포함하여 전문성 보장

라. 지원대상자의 의무 구체화(안 제9조)

- 우수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조문 신설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을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으로, “의거”를 “따라”로, “농·수·축산물”을 “농·수·축산물과 지역 농산물”로, “개선에 이바지함”을 “개선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활용 촉진

제3조제1호 중 “「학교급식법」 제4조”를 “「학교급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경비 중”을 “경비 중”으로 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한의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축산물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주하남교육청”을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조 제3

호”를 “제4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시”를 “사용 시”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담당과장 1명”을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추천인 3명”을 “추천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추천인 1명”을 “추천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추천인 2명”을 “추천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문인 1명”을 “전문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추천인 1명”을 “추천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의회의원

8.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사무국장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작”을 “개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우수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경기도광

주하남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학교급식법</u>」 제8조 제4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u>농·수·축산물</u>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u>개선</u>에 <u>이바지</u>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목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학교급식”이란 「<u>학교급식법</u>」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와</p>	<p>제1조(목적) ----- 「<u>학교급식법</u>」 제8조제4항 ----- ----- <u>따라</u> ----- ----- ----- ----- ----- ----- ----- ----- ----- ----- <u>농·수·축산물과 지역농산물</u> ----- ----- <u>개선과 지역</u> ----- ----- <u>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소비</u> ----- ----- <u>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u>-----.</p> <p>제2조(목표)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활용 촉진</u></p> <p>제3조(정의) ----- ----- -----.</p> <p>1.----- 「<u>학교급식법</u>」 제4조-----</p>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생략)

<신설>

3. (생략)

4. “지원금”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시에서 지원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라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광주하남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3호 경우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2. (현행과 같음)

3. “지역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한의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축산물을 말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
-- 경비 중 -----
-----.

제5조(경비의 지원) ① -----

범위-----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① -----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 제4조제3호 -----
-----.

1. ~ 3. (생략)

4.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5.·6. (생략)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평생교육원장, 기획조정과장, 평생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의회의원 2명

2.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담당과장 1명

3. 학부모단체(초·중·고) 추천인 3명

4. 농민단체 추천인 1명

5. 교사단체 추천인 2명

6. 식품영양 전문인 1명

7. 시민단체 추천인 1명

<신설>

⑤·⑥ (생략)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

1. ~ 3. (현행과 같음)

4. -----
-- 사용시 -----

5.·6. (현행과 같음)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시의회의원

2. ----- 담당과장

3. ----- 추천인

4. ----- 추천인

5. ----- 추천인

6. ----- 전문인

7. ----- 추천인

8.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사무국장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 심의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개회-----
-----.

④ ----- 위원 중 -----

-----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
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
야 하며, 특히 우수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하여 사용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
역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경기
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통하
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